

# PC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

(PCFilter 설치 및 사용자 설명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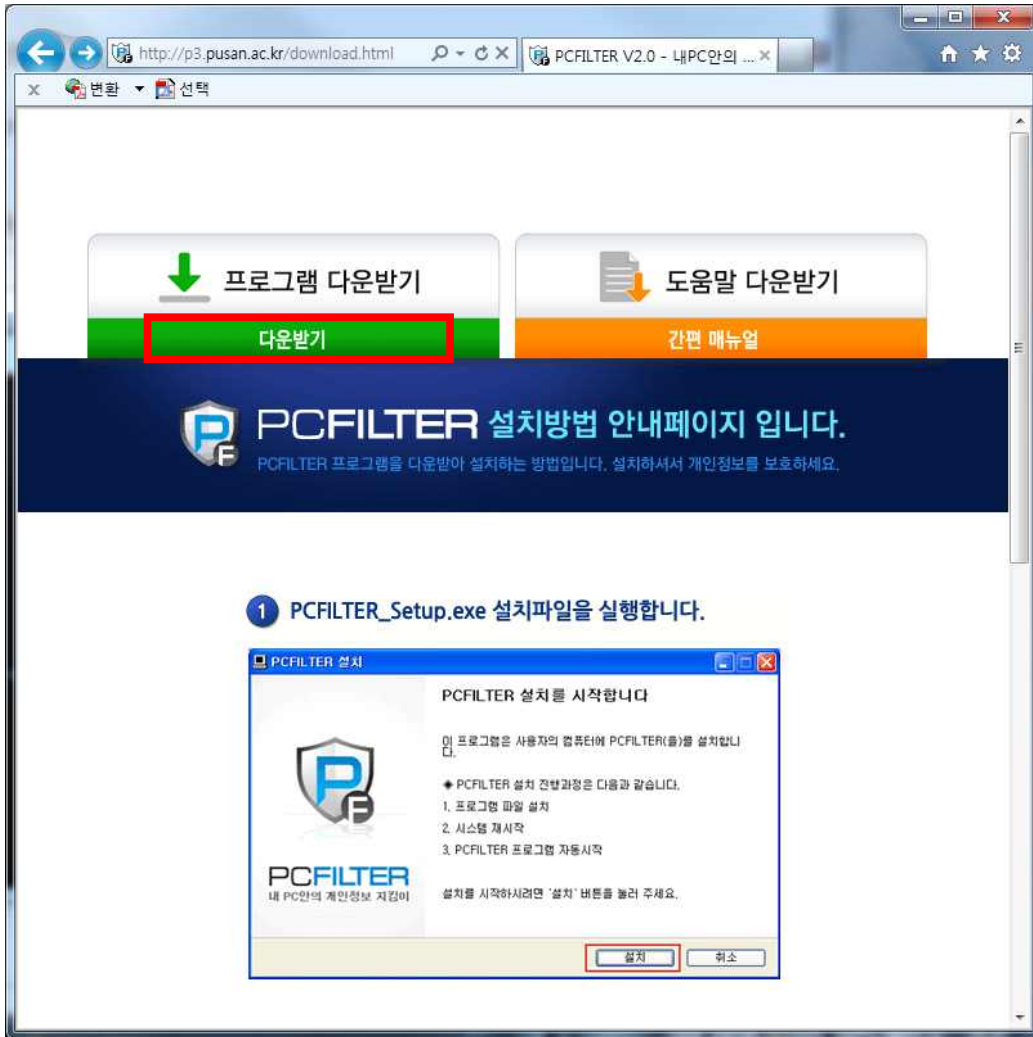
2024. 2.

부 산 대 학 교  
정 보 화 본 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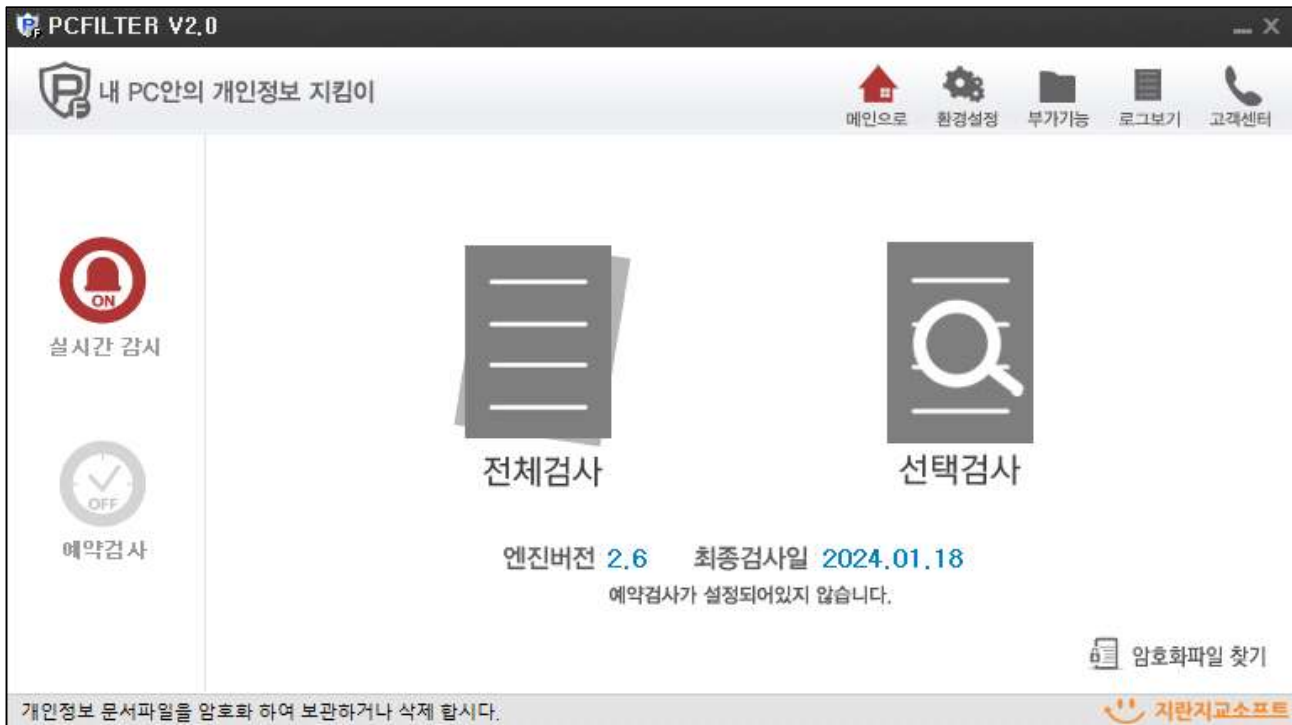
# 1. 프로그램 설치

- <https://p3.pusan.ac.kr>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- PCFilter 프로그램을 다운받기(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.)

※ 대학자원관리시스템(PIP)에서 사이버보안진단 업무용 PC 대상을 현행화하시면 대상 PC에 PCFilter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.



## 2. 메인화면



[에이전트 메인화면]

### ① 에이전트의 주 메뉴 정보

- 메인으로 : 검사완료 화면이나 환경설정 화면에서 메인화면으로 이동할 때 클릭합니다.
- 환경설정 : 에이전트의 설정 상태를 변경합니다.
- 로그보기 : 에이전트 검사, 실시간 감시, 보호활동에 대한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.
- 고객센터 : 에이전트 정보나 FAQ, 도움말을 볼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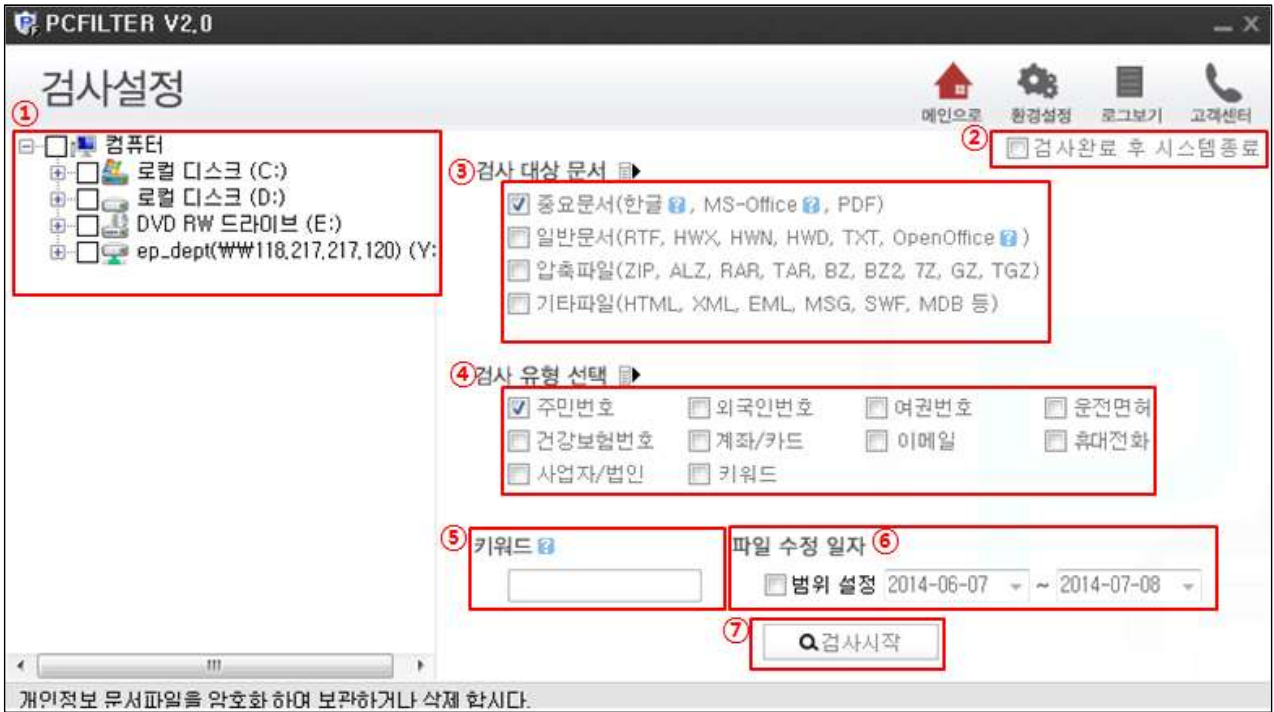
② 실시간 감시, 예약검사, 업데이트를 메인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③ 전체검사를 클릭하면 PC 내 모든 드라이브에 대한 검사가 시작됩니다.

④ 선택검사를 클릭하면 검사설정에서 세부 조건을 설정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.

⑤ PCFILTER로 암호화한 파일들을 검색하고,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.

### 3. 검사설정



[검사설정 화면]

- ① 디스크/폴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② 개인정보 문서검사 후 시스템을 자동으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.
- ③ 검사할 문서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④ 검사하고 싶은 개인정보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⑤ 개인정보 외 검사하고 싶은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
- ⑥ 파일이 수정된 일자 내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.
- ⑦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검사가 시작됩니다.

## 4. 검사 후 보호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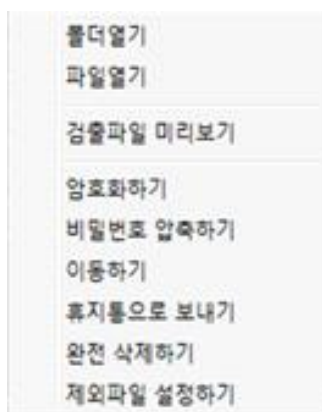


[검사완료 화면]

- ① 암호화 : 정밀검사 후 개인정보가 검출된 문서파일을 암호화하여 보관합니다.
- ② 압축 : 검사 후 개인정보가 검출된 문서파일을 비밀번호 압축하여 보관합니다.
- ③ 이동 : 검사 후 개인정보가 검출된 문서파일을 환경 설정에 지정한 폴더로 이동합니다.
- ④ 휴지통 : 검사 후 개인정보가 검출된 문서파일을 삭제합니다.
- ⑤ 완전삭제 : 정밀검사 후 개인정보가 검출된 문서파일을 완전삭제합니다.
- ⑥ 검사제외 : 검사를 실행하기 전 개인정보문서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.

### 주의사항

※ '완전삭제' 메뉴를 이용한 삭제 시, 삭제파일은 복원할 수 없습니다.



[마우스 우클릭 메뉴]



[검출내용 미리보기 기능]

## [암호화하기, 비밀번호 압축하기]

※ 검사완료 화면에 검출파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.



### [암호화하기, 비밀번호 압축하기 창]

- ① 암호화하려는 파일의 정보가 나옵니다.
- ② 암호화하기 창이 뜨면 저장위치를 찾습니다.
- ③ 저장위치를 선택하고 암호를 설정합니다.  
암호는 8~16자의 영문 대소문자, 숫자, 특수문자(!@#\$%^&\*())를 조합하여 입력합니다.  
(원본파일 보존하기를 체크하시면 원본파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.)

#### 주의사항

※ '암호화', '비밀번호 압축' 입력 비밀번호 분실 시 해당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합니다.

- ④ 암호화 진행 상태를 퍼센트로 표시합니다.
- ⑤ '암호화' 버튼을 클릭하면 암호화가 진행됩니다.  
※ 비밀번호 압축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.

## 5. 환경설정



[환경설정 화면]

- ① 실시간감시정책 : 실시간감시 ON/OFF 및 감시행위, 대상, 유형을 설정합니다.
- ② 개인정보 검사 설정
  - 전체 검사 설정 : 검사 시 검사 할 문서와 유형을 선택하고, 개인정보 포함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
  - 간편 검사 설정 : 간편 검사 시 검사 할 문서와 유형을 선택하고, 개인정보 포함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
  - 예약 검사 설정 : 예약 검사 사용 시 설정한 예약된 시간에 자동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.
- ③ 옵션
  - 검사 옵션 설정 : 모든 검사에 적용할 주민번호 검출단계설정, 검사제한 파일용량, 다중압축 단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.
  - 검사 제외 설정 : 모든 검사 시 제외 설정된 파일은 검사하지 않습니다.  
**(주로 오검출 파일을 설정합니다.)**
  - 기본 옵션 설정 : 검출된 파일을 따로 저장할 폴더설정과, 로그보관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## □ 관련 근거

### [개인정보 보호법]

**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**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,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(이하 생략)

**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** ① ~ ② (생략)

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**

(이하 생략)

**제75조(과태료)**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**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**

1. ~ 3. (생략)

4. 제21조제1항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**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**

5. 제23조제2항·제24조제3항·제25조제6항(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·제28조의4제1항·제29조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**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**

(이하 생략)